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도시건설위원회(도시재생과)

의안번호	357 호
제 출 자	임태근 의원 외 8명 (2021. 05. 2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에게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 산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2021. 6. 4.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내의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지원 대상, 지원기준, 지원방법 등은 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, 이중 강남구, 은평구, 종로구, 서초구 등 4개의 자치구에서는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일부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규정이 기 운용 중에 있는 바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다만,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에는 ‘방범시설 설치’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국·시비 지원은 불가하며 구비로만 지원이 가능할 것임.